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493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6,704,520원 부과고지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1. 기초사실

가.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은 2003. 12. 1.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6,704,520원을 납부기한 2003. 12. 21.로 정하여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4.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이하 '이 사건 체납지방세'라 한다) 7,120,19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고지하였다.

나. 그 후 [redacted]시 38세금징수과는 2016.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지방세 등 합계 11,903,450원을 2016. 6. 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redacted]구청장은 201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지방세 등 합계 11,866,170원(가산금 포함)을 2016. 7.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1. 이 사건 체납지방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지방세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보험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인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나 '압류(제4호)'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에서는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내에 '독촉 또는 납부최고'나 '압류' 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기간은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 시'까지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82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1) 구 서울특별시세조례(2007. 4. 17. 서울특별시조례 제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되 500만 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는 시장이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redacted]시장은 위 조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상 체납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해 원고 명의 재산을 조회하여 원고 명의로 [redacted]보험회사와 사이에 1986. 11. 14.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2006. 9. 19. 원고의 위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3. 3. 7. 570원을 추심한 뒤 같은 달 27.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청약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 자필서명이 원고의 필적과 다르고[그 필적은 보험모집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모집자보고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필체와 상당히 유사하다], 위 보험계약은 1회 보험료 납입 후 보험료 미납으로 1988. 1. 1. 실효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필적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청약서는 원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서명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반환채권은 원고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위 압류처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은 늦어도 2004. 2. 16.자 최초 납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 날(위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으나, 그 후 2006. 9. 19. 압류 등 징수절차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그 전에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이후로서 위 무효인 압류처분이 있은 2006. 9. 19.로부터도 5년이 훨씬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를 지방세체납자로 관리하고 계속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체납지방세 납세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 구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2007. 4. 17. 조례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오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7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 다만,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와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끝>